

석유 지하 탱크 법규 173-360 WAC

와싱턴주 환경부는 주법 173-360 장을 개정하려 한다. 법개정의 사유는 석유지하 탱크로부터 석유누출을 방지하고, 누출시라도 신속히 탐지후 정화 하려함이다. 오는 4월 6일에 법개정의 전문을 고시할 계획이다.

법개정 영역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려 한다:

- 2015년 6월에 개정된 연방법 (40 CFR Parts 280 과 281) 을 포함한다.
- 주헌법 (Chapter 90.76 RCW)에 의거 주정부 지하탱크 관련법의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 지하탱크 수리등을 하는 사업자 관련 법을 개정한다.
- 관련 연방법규와 일맥 상통하며, 명쾌하고 분명, 간단 명료하게 법규를 재정리함을 뜻한다.

법개정 사유

개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주헌법 (Chapter 90.76 RCW)에 의거 와싱턴주의 지하탱크법이 연방정부의 인준을 받기위함이다.
- 주헌법 (Chapter 90.76 RCW)에 의거 석유지하탱크 관련법규를 개정하기위함이다.
- 석유 지하탱크로 부터 유해물질이 누출됨을 방지하기위함이다. 누출된 유해물질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주위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수있다. 누출 사고 건수를 줄이고 사전에 대형사고를 방지함에 있다.
- 개정법규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이행하기 쉽게 함에있다.

문제점 요약

주 환경부 석유 지하탱크 규제 의 목적은 지하탱크로부터 유해물질이 누출됨을 방지하기위함이다. 누출된 유해물질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주위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수있다. 주환경부는 현재 약 3,300 업소에서 9,000 개 가량의 시설이 있다. 현재 매년 50 건 정도의 신규 누출 신고가 접수되고있다. 개정될법규는 누출 사고건수를 줄이고 사전에 대형사고를 방지함에 있다.

자세한 정보:

석유 지하탱크 부서에 관해 자세히 알기원하면 아래의 웹 참조:

www.ecy.wa.gov/programs/tcp/ust-lust/tanks.html.

연락처:

Scott O'Dowd
Rule Coordinator
360-407-7195
USTrule@ecy.wa.gov

장애자를 위한 안내:

시각장애가 있는분은 360-407-7170 으로 전화 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청각 장애자는 711 으로 전화 하여 도움을, 구두 장애자는 877-833-6341으로 연락 후 TTY 를 요청하세요.

개정법규 대상

개정법규 규제대상은 아래와 같은 업무 관련인이다.

- 석유지하 탱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 석유지하 탱크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일을 하는 업주.
- 석유를 배급하거나 폐유를 수집하는자.
- 시설물에 오염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업주.
-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고하는업주.

개정법규 개정진행 사항을 알기원할때

법규개정 진행사항을 알기원하거나 공청에 참가하기를 원하면:

1. 웹 참조: www.ecy.wa.gov/programs/tcp/regs/wac173360/1602ov.html.
2. 개정관련 email 을 받기원하면: <http://listserv.wa.gov/cgi-bin/wa?A0=ECOLOGY-UST-RULE>.
3. 아래 법규 개정 담당자에게 연락:

Scott O' Dowd
 Department of Ecology
 P.O. Box 47600
 Olympia, WA 98504-7600
 Phone: 360-407-7195
 Fax: 360-407-7154
 Email: USTrule@ecy.wa.gov

여러분의 참가를 원함

법규개정에 직접 참가하고 싶은 이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르면 됩니다.

1. 개정 법조문 개정논의에 참가
 법조문 논의 과정중에 환경부는 연방 환경청, 관련 다른 주정부 기관, 규제대상 업체 대표, 그리고 관심있는 모든시민을 초청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워싱턴 주내에 거주하는 인디안 정부대표 와도 접촉하여 조언을 받을계획으로 있으며, 개정법규 초안을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2. 개정초안에 청문회 기간중에 의견 진술
 개정기간중 적어도 한번은 공개 공청회를 열며, 일반인이 공개의견을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